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며,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대상과 신고 방법 등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 대상기관을 정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제도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 대상기관(제32조, 제62조, 제63조 별표2)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 대상을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기관(①연 매출액

- 또는 수입이 1,800억원 이상인 자로서,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②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 ③대규모 민감정보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④공공시스템운영기관)으로 함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3)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 대상기관 구체화(제34조의9, 제63조 별표2)

-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국내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3,000만명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
- 2) 인증 의무대상기관이 의무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증 내용을 표시·홍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제도 관련 사항 정비(제30조의2,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8조의7)

- 1) 유출등 가능성 통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기기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알게 된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불법적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때, 유출등 가능성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

2)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도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및 신고를 하도록 함

3)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항목에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 피해를 최소화할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계정 보호조치 추가

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제63조 별표2)

1)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 또는 경고하는 경우, 이를 위반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고 재발 시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함

2)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정비

마.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사업의 위탁근거 정비(제62조)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사전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업무 추가

바.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 구체화(제13조)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대상 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6.1. ~ 2026.7.11.)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를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과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로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의2제2항제1호 중 “분실·도난·유출”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변경·해제하고 신고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신고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변경·해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32조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제7호”를 “법 제31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제1호 사목 단서 중 “제4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중전의 나목) 중 “임원(임원)”을 “나목에 따른 임원”으로, “장)”을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으로, “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를 “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매출액등이 1,500억원”을 “매출액 등이 1,8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6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7항”을 “법 제3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제8항”을 “법 제31조제9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에”로, “보호의”를 “보호”로 한다.

제3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9(개인정보 보호 인증 대상자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과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 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3,000만명 이상인 자(단, 임·직원 정보는 제외한다)

제39조의 제목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를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유출등이 되었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계정 보호조치를 말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에 대한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객관적인 정황이 있으나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이외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도 유출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유출등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과도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통지 취지와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그 경위

3. 법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4. 유출등의 여부가 확정될 경우의 추가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출등의 가능성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유출등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지

2.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출등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정정 통지

⑤ 제1항에 따른 통지 기한 내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를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의7제3항제1호 중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

제62조제3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16.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별표 1 중 “(제32조제4항 관련)”을 “(제32조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경우”를 “경우(다목에 따라 시정조치 등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날과”를 “날(다목에 따른 시정조치 등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조치 등 또는 경고를 받은 날을 말한다)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를 “면제(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 또는 경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법조문	위반	위반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16조제3항·제22조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900	1,800	3,000
다. 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900	1,800	3,000
라.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900	1,800	3,000
마. 법 제21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900	1,800	3,000
바. 법 제21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2호	300	600	1,0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아. 법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4제1항·제29조(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900	1,800	3,000

자. 법 제23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900	1,800	3,000
차. 법 제24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900	1,800	3,000
카. 법 제24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900	1,800	3,000
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900	1,800	3,000
파. 법 제25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900	1,800	3,000
하. 법 제25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거. 법 제25조의2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900	1,800	3,000
너. 법 제25조의2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법 제75조	300	600	1,000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4호			
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5호	300	600	1,000
머.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900	1,800	3,000
버.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600	1,200	2,000
서. 법 제27조제1항·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6호	300	600	1,000
어. 법 제28조의4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7호	300	600	1,000
저. 법 제28조의5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900	1,800	3,000
처. 법 제28조의8제4항(법 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4호	900	1,800	3,000
커.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8호	300	600	1,000
터. 법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	법 제75조 제2항제14호의2	900	1,800	3,000

0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퍼. 법 제31조제3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4호의3	900	1,800	3,000
허. 법 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4호의4	900	1,800	3,000
고.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0		
노.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3호	2,000		
도. 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4호	2,000		
로. 법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 제9호의2	300	600	1,000
모.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5호	900	1,800	3,000
보.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5호의2	900	1,800	3,000
소.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6호	900	1,800	3,000
오.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6조제	법 제75조	900	1,800	3,000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2항제17호			
조. 법 제34조제4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8호	900	1,800	3,000
초. 법 제35조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9호	900	1,800	3,000
코.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0호	300	600	1,000
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0호	900	1,800	3,000
포. 법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1호	900	1,800	3,000
호. 법 제36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2호	900	1,800	3,000
구.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3호	900	1,800	3,000
누. 법 제37조의2제3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4호	900	1,800	3,000

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1호	300	600	1,000
루.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2호	300	600	1,000
무. 법 제63조제1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5호	900	1,800	3,000
부. 법 제63조제2항(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6호	900	1,800	3,000
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7호	900	1,800	3,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이사회 의결 및 신고방법·신고절차에 관한 특례) ① 법 시행 당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제1호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

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신고 기한을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인증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4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 와 방법) ① (생 략) <u><신 설></u>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 와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2 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u> 1. <u>법 및 이 영에 따른 의무 대 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 요한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에 관한 사항</u> 2. <u>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 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 보 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 제1항 및 제2 항----- -----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과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 -----.
② <u>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

치 등) ① (생략)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2. (생략)

③ ~ ⑦ (생략)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1조제4항제9호-----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가. ~ 바. (생략)
 -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변경·해제하고 신고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신고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변경·해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아. (생략)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략)

<신 설>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2항제2호-----
-----.

아.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원(「상법」 제401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다. 나목에 따른 임원-----
- 장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2. ~ 4. (생략)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
-----를 말한다.

1. --- 매출액 등이 1,800억원 -

가.·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⑦ -----
----- 법 제31조제4항-----

-----.

⑧ -----

----- 법 제31조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 3. (생략)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6. (생략)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

제7항-----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8항-----

1. ~ 6.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31조제9항-----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
----- 보호 -----

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9(개인정보 보호 인증 대상자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4.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3,000만명 이상인 자(단, 임·직원 정보는 제외한다) 제39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① ----- ----- 유출등이 되었음----- ----- ----- ----- -----
--	--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 (생략)

<신설>

---. -----

-----.

1.·2. (현행과 같음)

② -----

---- 제7호 -----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 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계정 보호조치를 말한다.

제39조의2(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에 대한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객관적인 정황이 있거나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

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이외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도 유출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유출등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과도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통지 취지와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그 경위
3. 법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4. 유출등의 여부가 확정될 경우의 추가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출등의 가능성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유출등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지

2.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출등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정정 통지

⑤ 제1항에 따른 통지 기한 내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

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
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통지를 갈
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
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
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
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
하는 것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
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
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
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
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제40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 -----

----- 제4항 -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7호

③ 법 제34조제4항 -----

-----.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생략)

④ (생략)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② (생략)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 설>

범위 및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유출등이 되지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업무의 위탁)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9. ~ 14. (생략) <u><신설></u> ④ · ⑤ (생략)	<u>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신고</u> <u>의 접수 및 처리</u> 10. ~ 15. (현행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16. <u>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u> <u>사전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u> <u>요구 및 접수</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3057